

#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18. 0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생교육 대상과 지원방법,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 참여촉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 명확화(안 제4조)

- 종전의 평생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로 변경하여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

### 나. 경비보조 지원 기준 구체화(안 제5조제2항, 제3항 신설)

- 평생교육 활성화 방법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소요되는 지원기준 구체화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18년 예산에 12백만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8.3.5.~3.25.) 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원안동의(2018.1.29. 기획감사실-1406호)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(2018.2.19. 기획감사실-2201호) 반영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권고(2018.1.30. 주민생활지원과-7127호) 미반영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##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평생교육의 범위”를 “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평생교육”을 “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, 평생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.

제5조의 제목 “지원”을 “경비보조 및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·시설·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

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군수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”를 “군수는 법 제14조”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, 성인기초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 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주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</u></p> <p><u>2. “문자해득교육”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(文字解得)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.</u></p> <p><u>3. “평생교육사”란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평생교육의 범위)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제5조(지원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제6조(설치) 군수는 「평생교육

제4조(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)

-----  
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, 평생교육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.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5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군수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·시설·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

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설치) 군수는 법 제14조---

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4조(설치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

③ 군수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9조(임기) -----  
----- 한 차례만 연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14조(설치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-----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평생교육법

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5조(경비보조 및 지원) 제3항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
연락처	(033) 330 - 2210